**협력사 ESG 가이드라인**

**(GSSC: Guideline for Sustainable Supply Chains)**

1. **개요**
	1. **목적**두산퓨얼셀은 윤리적이며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사 가이드라인 GSSC (Guideline for Sustainable Supply Chains)'(이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가이드라인은 두산퓨얼셀에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협력회사들이 지켜야 하는 노동 및 인권, 안전 및 보건, 환경, 윤리 및 공정거래에 대한 요건을 정의하고 있으며, 협력회사는 최소한 해당 협력회사의 1차 공급망에 본 가이드라인의 준수와 실행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본 가이드라인은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RBA) 행동규범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 선언(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UN 세계인권선언(UN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비롯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관에서 제정한 글로벌 표준 및 가이드라인은 추가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본 가이드라인은 협력사가 이행해야 할 사항을 모두 명시한 것은 아니며, 가이드라인은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완 및 개정될 수 있다.
	2. **대상**

두산퓨얼셀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본 행동규범의 적용 대상인 모든 협력사는 거래업체(하위 협력사) 등 공급망 전반이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 1. **협력사 책임과 역할**

두산퓨얼셀의 모든 협력회사는 경영의사결정 및 사업운영과정에 있어 본 행동강령이 제시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두산퓨얼셀 및 두산퓨얼셀의 위탁을 받은 제3자 기관은 협력사가 본 행동규범이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검 및 실사할 수 있다. 본 행동규범 준수에 대한 점검 및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두산퓨얼셀은 확인된 리스크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개선사항에 대해 상호협의를 바탕으로 리스크 완화계획 수립 및 이행조치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본 행동규범은 협력사의 이행 의무사항을 모두 명시한 것은 아니며,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본 행동규범은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완 및 개정될 수 있다. 본 행동규범은 두산퓨얼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두산퓨얼셀 담당부서를 통해 본 행동규범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1. **노동 및 인권**
	1. **차별 금지**

두산퓨얼셀의 협력회사는 고용과 승진, 보상,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과 같은 고용 관행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 성향, 민족, 장애, 건강상태, 임신, 종교, 정치 성향, 노조 가입, 국적, 결혼 여부에 대한 불법적인 차별과 괴롭힘이 없는 작업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1. **인도적 대우**

두산퓨얼셀의 협력회사는 모든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육체적 강압, 폭언, 불합리한 제한 등 비인도적인 대우가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협력회사는 합리적인 징계규정과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해당 규정과 절차를 근로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 1. **미성년 근로자 보호**

두산퓨얼셀의 협력회사는 국제노동기구의 최저연령 협약을 준수하며, 현지 법령 상 규정된 최저고용연령 미만의 직원을 고용해서는 안된다.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초과/야간 근무 및 안전보건상 위험한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 실습생이 있을 경우, 현지 법률 및 규정에 의거하여 적절한 관리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1. **임금과 복리후생**

두산퓨얼셀의 협력회사는 최저임금, 시간외 수당 등 법규를 준수하여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급여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 모든 근로자의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현지 법령 상 규정된 최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1. **자발적 근로/강제노동 금지**

두산퓨얼셀의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노예, 인신매매, 비자발적 죄수노동 등)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채용 시에는 근로자가 이해 가능한 언어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후 반드시 1 부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여권, 근로 허가증 등의 원본 서류는 근로자 본인이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고용주는 그러한 보관이 법적 의무사항인 경우에만 문서를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들이 문서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하지 말아야 한다. 고용주의 인력 알선업체 또는 하청업체의 모집 수수료 또는 고용 관련 기타 수수료를 근로자에게 지불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이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지 않고, 근로자는 희망 시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어야 한다.

* 1. **결사의 자유 보장**

두산퓨얼셀의 협력회사는 현지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 가입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단체협약과 평화적 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는 차별, 보복, 위협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근로조건과 경영방침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경영진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
	1. **산업안전 관리**

두산퓨얼셀의 협력회사는 물리적인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적절한 설계, 엔지니어링 및 행정적 통제, 예방 정비, 안전한 작업절차를 통해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들이 잠재적 안전 위험요소(예, 전기 및 기타 에너지원, 화재, 차량, 추락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단으로 위험 요소들을 충분히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 1. **기계설비의 안전유지**

두산퓨얼셀의 협력회사는 생산 및 기계설비의 안전 위해 요소를 평가해야 한다. 근로자가 설비로 인해 상해를 당할 위험이 있을 경우 협력회사는 안전장치, 방호벽, 긴급장치 등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 보호구를 지급해야한다.

* 1. **비상사태 대비**

두산퓨얼셀의 협력회사는 자연재해, 집단감염, 화재 및 안전 사고 등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비상상황 발생 보고, 대응, 후속조치 등의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비상사태 법률 및 자체 수립된 계획 및 매뉴얼에 따라 반기 1 회 이상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상대피로, 유도 등, 감지기경보기, 소방시설 등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1. **재해 및 질병관리**

두산퓨얼셀의 협력회사는 산업 재해와 작업병을 예방, 관리, 추적, 보고하기 위한 절차와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해당 시스템은 근로자의 부상 및 질환을 파악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를 포함한다.

* 1. **안전보건 법률 및 규정 준수**

두산퓨얼셀의 협력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안전보건관련 인허가를 취득·유지해야 한다.

* 1.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구축**

두산퓨얼셀의 협력회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최적의 작업환경을 조성·유지할 수 있도록 최고경영자가 경영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반영하여 계획, 실행, 점검 등 결과를 검토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표준화 기구에서(ISO)제정한 ISO45001, 한국형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한 KOSHA-MS(구. KOSHA 18001)가 이에 해당됨

* 1. **위험성평가**

두산퓨얼셀의 협력회사는 위험요인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가능성을 파악하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안전한 공정의 설계, 기술적/행정적 통제, 예방정비, 작업절차서 내 안전측면 반영, 지속적인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하고,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며 대상 근로자는 반드시 착용하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 1.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두산퓨얼셀의 협력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건강검진 법률에 따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 또는 특수건강검진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건강검진결과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 1. **신체부담 업무**

두산퓨얼셀의 협력회사는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무거운 자재를 들어올리거나 심하게 반복적인 작업, 장시간 서 있는 작업, 체력 소모가 심한 조립작업 등의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에 노출되는 것을 파악하고 평가하며 통제해야 한다.

**3.10 위생, 식품 및 주거**

두산퓨얼셀의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청결한 화장실과 식수 시설, 위생적인 식품 조리/보관 시설과 식사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기숙사는 청결하고 안전을 유지해야 하며, 적절한 조명, 비상 탈출시설, 난방, 온수, 환기시설, 개인물품 보관시설 및 적절한 출입장치가 있는 합리적인 크기의 개인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3.11 안전보건 커뮤니케이션**

두산퓨얼셀의 협력회사는 작업장의 확인된 모든 위험에 대해 근로자에게 적절한 안전보건 정보와 교육을 모국어 또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하고 사업장내 안전보건 정보는 잘 보이도록 게시되어야 한다.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가 건강 및 안전의 우려사항을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1. **환경**
	1. **환경 법률 및 규정 준수**

두산퓨얼셀의 협력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환경 인허가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하고 당사의 환경/품질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1. **유해물질 관리**

두산퓨얼셀의 협력회사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유해물질을 파악하고, 이러한 물질의 안전한 취급과 이동, 보관, 사용, 폐기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유해물질은 외부로 배출되거나 인체에 노출될 경우 환경이나 근로자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화합물이나 기타 물질을 의미한다.

* 1. **환경 배출물질 관리**

두산퓨얼셀의 협력회사는 설비, 작업공정, 위생시설 등의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환경배출물질을 처리함에 있어 배출물질에 대한 정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현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어 및 처리방법과 허용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환경배출물질은 폐수, 폐기물 (일반/지정), 대기오염물질, 오존층 파괴물질을 의미한다.

* 1. **자원 효율성 향상**

두산퓨얼셀의 협력회사는 사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자원을 공정효율화, 원료 대체, 자원의 재활용 및 재사용 등의 개선활동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자원은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원/부자재와 에너지, 용수 등을 포함한다.

* 1. **제품 환경 규제 대응**

두산퓨얼셀의 협력회사는 제품과 관련된 재활용 및 처리 라벨 표시를 비롯하여 현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물질의 금지, 허가, 등록 등에 대하여 관련법과 규정, 고객 요구사항 일체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관리**

두산퓨얼셀의 협력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환경 관련 법령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환경 관련 인허가를 획득해야 한다.

* 1. **생물다양성 보존 및 산림파괴 금지**

두산퓨얼셀의 협력회사는 유엔환경계획(UNEP) 주도 아래 국제사회가 합의한 생물다양성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UN 지구산림목표를 위한 전략계획(UN, Strategic Plan for Forests and GFGs) 등 글로벌 사회의 노력을 존중하며, 사업활동 시 부정적 환경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1. **책임있는 광물 구매**

두산퓨얼셀의 협력회사는 책임 있는 공급망의 일원으로서 국제 사회에서 인권침해와 환경파괴로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어 사용을 제한하는 특정 원산지의 광물(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을 두산퓨얼셀의 공급망 내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와 관련된 국제 규정과 국가별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협력회사는 관련 물질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윤리 및 공정거래**
	1. **투명경영 및 반부패**

두산퓨얼셀의 협력회사는 모든 비즈니스 관계에 있어 최고 수준의 윤리 기준이 요구된다. 모든 형태의 부패나 갈취, 횡령, 뇌물 수수, 상납, 향응 등의 비윤리적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는 무관용 정책을 표방해야 한다. 협력회사는 이러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감시 및 단속 절차를 이행하여 자율적 윤리 준수를 실천하고 반부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감시, 기록 관리, 집행 절차를 실행해야 한다.

* 1. **공정거래 준수**

두산퓨얼셀의 협력회사는 사업 상에서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거래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수단을 제공하거나 수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불공정한 거래관행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공급량, 거래지역, 거래조건 등에 관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해서는 안 되며 회사, 경쟁업체, 협력업체, 제3자로부터 부정하게 정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정보를 사용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 1. **투명한 정보공개**

두산퓨얼셀의 협력회사는 관련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활동과 재정상황, 사업성과 등에 대한 정보를 거짓 없이 공개한다. 모든 업무 거래를 투명하게 실행하고 협력회사의 사업 장부와 기록에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협력회사의 노동, 보건과 안전, 환경관리 실태, 사업 활동, 구조, 재무 현황 및 성과에 관한 정보를 관련 일반적인 산업계 관행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공급망 내 관련 분야 실태 및 관행에 대한 기록 위조나 부실 표기는 용인될 수 없다.

* 1. **지적재산권 보호**

두산퓨얼셀의 협력회사는 사업 상 타인의 특허, 소프트웨어, 디자인, 상표 등과 같은 지적 재산을 침해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은 해당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1. **개인정보보호**

두산퓨얼셀의 협력회사는 모든 이해관계자(협력회사, 고객사, 임직원 등)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호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이용, 제공, 파기 등 처리 시 관련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 1. **신원보호와 보복금지**

두산퓨얼셀의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기밀성, 익명성 및 신원보호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1. **경영 시스템**
	1. **규정 준수**

두산퓨얼셀의 협력회사는 비즈니스 추진과 관련된 법규, 규정, 고객의 요구사항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준수 사항에 대해 지속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1. **협력회사의 책임**

두산퓨얼셀의 협력회사는 하위 협력사에게 본 규칙을 전달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해야 하며, 하위 협력사가 관련분야의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거나 리스크를 인지한 경우 개선을 권고하여야 한다.

* 1. **위험평가 및 관리**

두산퓨얼셀의 협력회사는 본 규범과 관련된 리스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고 중대한 리스크를 발견한 경우 해당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한다.

* 1. **목표 수립 및 관리**

두산퓨얼셀의 협력회사는 사회적, 환경적 및 안전보건 성과 개선을 위한 목표, 대상, 실행 계획을 문서화하고, 성과 진척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1. **가이드라인 게시 및 교육**

두산퓨얼셀의 협력회사는 본 가이드라인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직원들이 본 가이드라인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1. **피드백 및 신고**

두산퓨얼셀의 협력회사는 본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기준과 조건에 관하여 직원들의 피드백을 접수하고, 피드백 사항에 대해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는 두산퓨얼셀의 사이버 신고센터 (02-3398-0922 / https://ethicshelpline.doosan.com/cbrpt/frontView.do)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